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8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오세희·장철민·허종식

김준혁 · 김동아 · 이재관

정진욱 • 박지혜 • 김영진

김교흥 • 이상식 • 이재강

허성무 · 손명수 · 이언주

최민희 · 송재봉 · 송옥주

김남근 · 김문수 · 강준현

박민규 · 김기표 · 민병덕

박정현 • 권향엽 • 김원이

김남희 • 정준호 • 박홍근

주철현 • 전진숙 • 조인철

서미화 • 위성곤 • 민형배

김정호 · 신영대 · 김 윤

박수현 • 박지원 • 양부남

김주영 • 이기헌 의원

(4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 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 · 도시가스요금의 지원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99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 · 도시가스요금의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			
<u>다.</u>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		
	한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지		
	<u>원</u>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991호 소상공인 보호	법률 제1999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의3. (생 략)	1. ~ 17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7의4.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 · 도시가스요금		
	<u>의 지원</u>		

18.	\sim	25.	(생	략)
10.		۷٠.	(' 8'	コノ

② ~ ④ (생 략)

18. ~ 2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